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03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이강일 · 김 윤 · 황운하
송재봉 · 민병덕 · 박희승
허 영 · 김문수 · 이훈기
김남근 · 백혜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 · 매장임대차 ·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 · 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 · 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부터”를 “제8조의2, 제11조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대금을 30일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사유를 납품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납품업자등과 협의하

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품대금등의 별도관리)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이하 이 조에서 “상품대금등”이라 한다)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예치의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대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기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관리기관은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등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⑥ 상품대금등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과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⑦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대금등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지급”을 “관리·지급”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직매입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품판매대금 등의 별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 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6조의2, 제8조, <u>제11조부터</u>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 ----- ----- ----- ----- ----- ----- <u>제8조의2, 제11조부터</u> ----- ----- ----- ----- ----- -----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 ----- ----- ----- <u>10일</u> ----- ----- -----.
1. ~ 3.(생략)	1. ~ 3.(현행과 같음)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② -----

-----20일-----

-----. 다만, 상품의 대금을 30일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사유를 납품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납품업자등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⑤ -----
-- 제4항 -----

-----.

제8조의2(상품대금등의 별도관리)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이하 이 조에서 “상품대금등”이라 한다)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예치의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

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되는 상품대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기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납품업자들의 청구에 따라 해당 납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업자들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관리기관은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대규모

	<u>유통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등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u> <u>⑥ 상품대금등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납품업자등과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u> <u>⑦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상품대금등의 범위 및 산정방법, 그 밖에 판매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	제32조(시정명령) ----- -----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 ----- -----

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 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범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관리 · 지급

제35조(과징금) ① -----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
조, 제10조-----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	---